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
(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40호
- 나. 제출자 : 정재동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2. 제안이유

금천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안전보안관의 위촉, 교육 및 임기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대표단 구성, 활동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 ~ 제7조)
- 라. 관리 및 해촉,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 및 제9조)
- 마. 지역사회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- 바. 안전보안관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(안 부칙 제2조)

4. 관계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, 제66조의4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 제3항 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”에 의거 우리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규 제정하는 것임.
- 주요내용으로는
 - 10개의 본칙 조문과 2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
 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 하였고
 - 안 제3조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구민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
 - 안 제4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에 대해
 - 안 제5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대표단 구성에 대해
 - 안 제6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범위에 대해
 - 안 제7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
 - 안 제8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- 안 제9조에서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하고
 -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사회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, 서울특별시,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고
 - 부칙으로 당해 조례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당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- 본 제정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·정착화하여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을 발굴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 - 참고로 이미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미제정 자치구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[시행 2023. 9. 15.] [법률 제19234호, 2023. 3. 14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23. 5. 16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2. 22., 2014. 12. 30., 2015. 7. 24., 2019. 12. 3.>

[전문개정 2010. 6. 8.]

제66조의4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, 2017. 1. 17.>

1.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(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)

2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
3.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·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·보급
4.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5.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·활용 및 공개
6.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

6의2.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

7.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·조정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·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.>

[본조신설 2013. 8. 6.]

[제66조의2에서 이동, 종전 제66조의4는 제66조의8로 이동 <2017. 1. 17.>]